

제품사고, 알릴수록 예방된다



국민의 안전 보호와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올 1월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기업은 사업자의 ‘제품사고 보고의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업자는 해당 사고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무조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을 알릴수록 명약이 나온다고 했다.



김 정 환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새로운 소비의 시대에 맞게 제품안전기본법 손질

첨단기술로 무장한 다양한 신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와 우리의 소비욕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 게다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손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품 수명 주기도 ‘급속’이다.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는 제품이 제품을 사게 하는 시대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세르주 라투슈는 이러한 소비현상을 두고 그의 저서 『낭비사회를 넘어서』를 통해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라고 분석할 정도다. 이는 제조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용 연한을 상정하고 그에 맞춰 제품에 문제가 생기도록 인위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는 뜻이다. 대체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자. 휴대폰, TV, 냉장고 등은 이제 ‘반려 제품’이라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제품사고를 인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기업이 입는 피해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재빨리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품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널리 알리고, 사고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제품안전관리체계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개별법을 운영해왔다. 또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의 사전적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유통단계의 위해제품에 대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게다가 시대적으로는 유통시장이 급속히 다변화되고 대외 개방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불법·불량 수입제품에 의한 위험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리콜,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고제품에 대한 조사 등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사후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괄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를 통해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품의 유통시장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성조사는 제품의 제조 및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유통시장의 변화와 국민참여형 제도의 필요성에 맞춰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한 ‘선진형 제품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1월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한 것이다.

제품사고, 무조건 보고할 것

이번에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의 핵심은 더욱 엄격해진 ‘제품사고 보고의무’이다. 제품으로 인한 사망, 전치 4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해당제품의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고 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품 수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품 수거 등을 한 경우는 2011년 8건, 2012년 25건, 2013년 8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사업자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사고내용을 바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업자 보고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제품사고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자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보고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제품 수거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것이지만,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수거나 개선조치 등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에 따라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품을 수거해야 된다.

사고보고 의무는 해외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진화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제품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제품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포함하여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2일 이내에 규정되어 있다. 호주 및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품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社가 오븐과 식기세척기의 결함을 알고도 미국 정부(CPSC)에 보고하지 않아 별금 350만 달러가 부과된 일이 있다. 이렇듯 제품의 제조사, 유통사, 판매사 등은 제품이 잠재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상해 및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 가. 사망
 - 나. 「의료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안전성조사, 대상 확대되고 결과는 공개

제품 유통 시장 관리의 핵심인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포함하여 확대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는 직접 안전성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제품의 기술상 · 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조사가 가능하도록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는 신제품으로 인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제품들에서 언제든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품의 기술 및 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안전기준 이외에도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 다양한 위해 요인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현재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제품사고조사 결과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정보에 대해 공표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 등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정부에 안전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선진형 제품안전관리체계로의 발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보다는 ‘시장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안전관리제도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고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위해제품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제품사고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

